

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의안번호 : 2216번
- 발 의 자 : 문영민 의원 외11명
- 발 의 일 : 2017년 11월 2일
- 회 부 일 : 2017년 11월 6일

2. 제안이유

- 교육지원청과 지역교육청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던 용어를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며, ‘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’의 당연직 위원에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제외하고,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함(안 제6조제1항, 제7조제2항).
- 나.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회 위원에서 제외함(안 제9조제2항).
- 다.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(안 제2조제2호, 제3조제1항제5호, 제8조의2제1항제7호, 제9조제5항 등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학교급식법」 제5조 (학교급식위원회 등)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입법예고(2017. 11. 09. ~ 11. 16) 결과 : 의견 없음.

5. 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‘지역교육지원청’과 ‘지역교육청’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던 용어를 ‘교육지원청’으로 명확히 하고(안 제6조제1항, 제7조제2항), ‘친환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’의 당연직 위원 중 행정1부시장을 제외하며(안 제9조제2항)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되었음.
- 안 제2조(제2호, 제6호, 제8호), 제3조(제1항제5호), 제8조의2(제1항제7호), 제9조(제5항), 제10조(4항) 및 제11조(2항) 중 의미가 불명확하거나, 일상에서 사용 빈도수가 적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임.

- ※ 제2조제2호 중 “친환경 급식” ⇒ “친환경급식”
제2조제6호 중 ““친환경농어업법”” ⇒ ““「친환경농어업법」””
제2조제8호 중 “친환경 급식” ⇒ “친환경급식”
제3조제1항제5호 중 “유관기관” ⇒ “관계 기관”
제8조의2제1항제7호 중 “유관기관” ⇒ “관계 기관”
제9조제5항 중 “해촉” ⇒ “위촉 해제”
제10조제4항 중 “가 정하는 바에” ⇒ “에서”
제11조제2항 중 “해태하거나” ⇒ “게을리하거나”

- ※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은 법률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으로 의무교육을 받는 국민이면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 언어 생활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임.

- 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은 ‘지역교육지원청’ 또는 ‘지역교육청’으로 잘못 표기 되었던 것을 ‘교육지원청’으로 용어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지원 신청) ① 시장에게 급식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<u>지역교육지원청</u>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지원 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<u>교육</u> <u>지원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지원대상자의 의무) ① (생략)</p> <p>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<u>지역교육청</u>을 거쳐 교육감에게,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7조(지원대상자의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교육</u> <u>지원청의 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- 안 제9조제2항제1호는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는 자 중에서 기존 ‘행정1부시장 및 학교급식 담당국장’에서 행정 1부시장을 제외하고, 학교급식 담당국장만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토록 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 회의 구성) ① (생 략)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 여 20명 이내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다. 1. 시 <u>행정1부시장</u> 및 <u>학교급식업 무 담당 국장</u>	제9조(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 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 <u>학교급식업무</u> ----- -----

- 위원회는 학교급식의 지원계획과 평가, 지원의 규모 및 방법, 급식의 품질 개선 등 학교급식관련 최고의 심의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, 서울시의 당연직 위원에서 행정1부시장이 제외됨으로 인해 위원회의 위상 및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그 파급효과가 크게 저하될 여지는 없는지, 위원회 개최 및 실행력 담보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.
- 개정안의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일반적으로 법령은 시행일 이후에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개정 조례 시행 당시 조례에 따라 위촉되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행정1부시장의 강제 해촉 문제 및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경과규정 도입 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.

전 문 위 원	김 태 한
입법조사관	정 찬 일